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이헌승·곽규택·김종양

서지영 • 박덕흠 • 윤상현

백종헌 · 장동혁 · 서일준

주호영 · 김도읍 · 김선교

정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 8조 등).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에서"를 "제4호까 지에서"로 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

제38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u>	<u>아동복</u>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u>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u>
	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아
	동을 보호하는 시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	2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u>중인 24세 이하의 사람</u>
<u>4.</u> 제1호부터 <u>제3호까지에서</u> 규	<u> 5.</u> <u>제4호까지에서</u>
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	
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	
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	
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③ (생략)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 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u>아동</u>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u>.</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